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25호 2021. 10. 1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규 칙

-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(예천군 규칙 제1296호)

고 시

- 선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1-73호)

공 고

-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120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10월 1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규칙 제1296호

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

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당직근무자 편성기준(제6조 제2항 관련)

구 분		본 청				직속기관 및 사업소 · 읍면
		당직 사령	당직 반장	당직 반원	운전원	당직반원
평일	숙직	1명 (팀장)	1명	1명	1명 (재택)	1명 (재택)
토요일 또는 공휴일	일직	1명 (5급)	1명 (팀장)	1~2명		1명
	숙직	1명 (팀장)	1명	1명	1명 (재택)	1명 (재택)

◇개정이유

운전원(청소차 운전자)은 업무 특성상 일직 대체휴무 사용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바 운전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일직 당직반원을 1명 충원하여 운전업무 수행과 당직근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○ 당직근무자의 편성 개정(별표 1)

- 토요일 또는 공휴일 본청 일직 운전원 삭제
-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(일직)반원 인원 변경
 - 일직 당직반원 : 1명 $\Rightarrow$ 1명 ~ 2명
-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곤충연구소 당직반원 인원 변경
 - 하절기 일직 당직반원 : 2명 $\Rightarrow$ 1명
 - 하절기 숙직 당직반원 : 2명(재택) $\Rightarrow$ 1명(재택)

선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

선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0. 14.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선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선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 개선, 재해위험시설 정비, 주택개량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

3. 사 업 비 : 1,699백만원(국비 1,249, 지방비 410, 자부담 40)

4. 주요 사업내용

- 노후주택정비 : 슬레이트지붕개량, 슬레이트지붕철거, 집수리, 빈집정비,
- 안전·위생확보 : 재래식화장실정비, 축대정비, 배수로정비 등
- 기초생활인프라 :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, 마을안길 확·포장, 가드레일설치
- 주민공동시설 : 한밭 다목적마당 조성, 성주골 다목적마당 조성
- 경관시설정비 : 담장정비, 쓰레기분리수거시설
- 휴먼케어 : 마을사진전시회, 귀농귀촌프로그램, 집수리기술교육 등
- 지역역량강화 : 마을만들기교육, 응급처치교육 등

5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(위·수탁 :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)

6. 사업시행기간 : 2020년 ~ 2023년(4년간)

7.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 고
						성명또는 명칭	주소	성명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종류 및 내용	
1	용문면 선리	230	답	2,133	2	정택인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222				
2	용문면 선리	222-7	대	575	575	김종수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0-12 정필맨손-101				
3	용문면 선리	222-6	대	1,537	6	김종수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0-12 정필맨손-101				
4	용문면 선리	222	대	1,002	2	김종수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0-12 정필맨손-101				
5	용문면 선리	222-8	대	312	1	김종수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0-12 정필맨손-101				
6	용문면 선리	222-9	대	221	1	김종수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0-12 정필맨손-101				
7	용문면 선리	221-1	대	585	10	한해수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455				
8	용문면 선리	220	답	263	27	정수식	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45-28				
9	용문면 선리	550	도	1,210	4	건설부	-				
10	용문면 선리	254-5	도	240	6	예천군	-				
11	용문면 선리	22	임	31,396	463	정삼달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9번길 32, 3동 502호(송내동, 우성아파트)				
12	용문면 선리	264-2	답	1,507	1	정택우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109				
13	용문면 선리	109	대	1,213	31	정도문	-				
14	용문면 선리	110	대	516	100	정원모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400-13				
15	용문면 선리	264-1	대	615	8	정택우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109				
16	용문면 선리	105-2	대	363	5	임익규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98				
17	용문면 선리	105-1	대	272	1	정두식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30번길 25-19(반송동)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 고
						성명또는 명칭	주소	성명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종류 및 내용	
18	용문면 선리	105	대	390	2	정운식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105				
19	용문면 선리	108	대	284	10	정원수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8 럭키반림아파트 8-501				
20	용문면 선리	114-1	대	167	5	정원수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8 럭키반림아파트 8-501				
21	용문면 선리	546	도	1,607	470	건설부	-				
22	용문면 선리	112-2	대	222	1	황송자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112				
23	용문면 선리	114	대	600	8	유금석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256				
24	용문면 선리	112-1	대	622	21	정운식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386-18				
25	용문면 선리	113	대	493	8	정창수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108				
26	용문면 선리	120	대	390	8	정광식	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9-75 대림4차아파트 1406				
27	용문면 선리	119	대	357	89	정택원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118				
28	용문면 선리	115	대	456	2	정오식	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-1 삼창 3-332				
29	용문면 선리	116	대	671	29	정원복	서울 노원구 공릉동 743 한보아파트 106-1704				
30	용문면 선리	107-2	대	243	16	정춘식	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107				
31	용문면 선리	107-1	대	499	9	정원복 외 1인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, 205호 (내수동, 용비어천가)	정점식	경남시 수정구 신흥동	소유권 지분 1/2	

8. 기타사항
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(054-650-6562) 및 농어촌공사
예천지사(054-650-7141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4일

예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의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 제한 규정 삭제(안 제5조)

- 상위법인 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,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
- 나. 전통시장 청년상인 발굴·육성에 대한 근거 신설(안 제12조의3)
- 지원대상 : 예천군 등록(인정) 전통시장 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
- 지원내용 : 사업장 시설(인테리어) 및 장비 비용, 홍보 및 창업·제품 개발 교육에 필요한 비용, 사업장 임대료 등 지원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새마을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eachksg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

3) 팩스 : 054-650-609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(전화: 054-650-685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업장 홍보 및 창업·제품개발 교육에 필요한 비용

6. 사업장 임대료

제5조 중 “주소와 사업장”을 “사업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전통시장 청년 상인 발굴·육성 등)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을 발굴·육성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예천군 등록(인정) 전통시장 내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자
2. 「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」에 의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내용)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지원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사업장 홍보 및 창업·제품 개발 교육에 필요한 비용</u> 6. <u>사업장 임대료</u>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예천군에 <u>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</u> 에게 적용한다. <u><신설></u>	제5조(적용 범위) ----- --- <u>사업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12조의3(전통시장 청년 상인 발굴·육성 등)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을 발굴·육성할 수 있다.</u> <u>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</u>

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제3조제1
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예천군 등록(인정) 전통시장
내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
자

2. 「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」
에 의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
하의 청년

【소상공인기본법】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【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】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단, 개별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.
2. “청년정책”이란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, 권익증진,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3. “청년단체”란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, 권익증진,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정치,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4. “청년활동”이란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 단체의 참여,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.
5. “청년공간”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공간을 말한다.